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 19) 상정

○ 제1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 19)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김 영 국)

가.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05. 2. 12. 건설교통부령 제425호)과「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2003. 12. 29. 경기도조례 제3305호)으로 상위법 및 도 조례에서 위임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원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각각 호당 1,000원, 비료 생산업 등록은 건당 5만원 및 비료수입원 신고는 건당 2만원으로 정함.(안 별표 1)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개정사유 발생시 조속히 개정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향후 관련법령 등의 개정시 관련 조례 등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74호
의결 년월일	2006. 1. 20 (제124회)

제출년월일 : 2006. 1.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05. 2. 12. 건설교통부령 제425호)과「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2003. 12. 29. 경기도조례 제3305호)으로 상위법 및 도조례에서 위임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원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각각 호당 1,000원, 비료생산업 등록은 건당 5만원 및 비료수입원 신고는 건당 2만원으로 정함.(안 별표 1)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의3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동항 제5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동항 제6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동항 제7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동항 제8호중 “참전군인등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동항 제9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동항 제10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증명의 제4호란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란 및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호	1,0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호	1,000원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원	
(2) 비료수입원 신고	1건	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제3조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3. (생 략)			
4. 주택에 관한 증명			
(1) (생 략)			
〈신 설〉			
〈신 설〉			
5.·6. (생 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7. (생 략)			
〈신 설〉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제3조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			
(1) (현행과 같음)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호	1,000 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호	1,000 원	
5.·6.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 원	
(2) 비료수입원 신고	1건	20,000 원	